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13 선고 2015가합10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의소]

전 문

원 고 A종교단체 B교회

피 고 A종교단체 C교회

변론 종결 2016. 11. 15.

판결 선고 2016. 1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2013. 6. 25. 접수 제6632호 및 제663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 접수 E로 마친 변경등록을 말소하며,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7.17㎡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교회의 설립 및 교회 명칭 변경

1) 'F교회'는 1990년경 설립되었는데, 2001년경 교회 명칭을 'A종교단체 F교회'로 변경하였고, 2011년경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교단에 가입하면서 교회 명칭을 다시 '피고(A종교단체 C교회)'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인 D은 2011. 10. 21.경 피고의 목사로 발령받아 시무를 하다가, 2013. 4. 15. 피고 재직회를 개최하여 재직회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G를 탈퇴하고 피고 명칭을 'B교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3. 4. 16.경 피고 교인들중 33명(미성년자 제외)으로부터 G에서 탈퇴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단 탈퇴'라 한다).

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자동차명의인변경등록 등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000. 7. 12.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접수 제5726호로 'F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2008. 9.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362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F교회'에서 'A종교단체 F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3 2011. 3.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67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A종교단체 F교회'에서 '피고(A종교단체 C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4 2013. 4.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5호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표시를 'D'으로 변경하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6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피고(A종교단체 C교회)'에서 '원고(A종교단체 B교회)'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5 2013. 6.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32호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표시를 'D'에서 'H'로 변경하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33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원고(A종교단체 B교회)'에서 '피고(등기부에는 C교회로 기재되었음)'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001. 8. 3.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접수 제6415호로 'A종교단체 F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 2011. 3.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67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A종교단체 F교회'에서 '피고(A종교단체 C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3 2013. 4.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5호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표시를 'D'으로 변경하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6호로 등기명의 인의 표시를 '피고(A종교단체 C교회)'에서 '원고(A종교단체 B교회)'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4 2013. 6.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32호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표시를 'D'에서 'H'로 변경하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33호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원고(A종교단체 B교회)'에서 '피고(등기부에는 C교회로 기재되었음)'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1 2012. 6.5. 접수번호 I로 '피고(자동차등록원부에는 C교회로 기재되었음)'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마쳐졌고, 2 2013. 4. 17. 접수번호 J로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피고(C교회)'에서 '원고[자동차등록원부에는 B교회(D)로 기재되었음]'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이 마쳐졌으며, 3 2013. 7. 1. 접수번호 E로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원고[B교회(D)]'에서 '피고[자동차등록원부에는 C교회(H)로 기재되었음]'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이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교단 탈퇴 후 피고는 이 사건 2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7.1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D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D은 2014. 2. 3. '이 사건 교단 탈퇴와 교회 명칭 변경을 위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함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고정13)은 2015. 7. 2. '위와 같이 교회 명칭을 피고에서 'B교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1911)은 2016. 2. 17. '피고가 그 정관 또는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이 사건 교단 탈퇴 내지 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D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3600), 대법원은 2016. 5. 24.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

피고는 2015. 1. 16. D을 상대로 목사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던 위 선내 "가"부분107.17㎡의 인도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가단3014)를 제기하여 2015.6. 10. 자백간주로 인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D이 항소하였다.

D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나52974)에서 '이 사건 교단 탈퇴가 무효라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은 여전히 피고 소속 교인들로 남아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교인들을 배제한 채 총회를 개최하여 소제기를 결의했으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2016. 1. 27.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에 남는다는 전제에서 교단 탈퇴에 찬성한 것일 뿐 종전 교회에서 탈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할 것인데, 위 교인들이 피고가 D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결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12135), 대법원은 2016. 5. 3.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10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자동차명의인변경등록 말소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5. 마쳐진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이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 마쳐진 자동차명의인변경등록은 각각 위조되거나 무효인 등기·등록원인서류를 첨부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등록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 인도청구

'종전 피고'1)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G에서 탈퇴하는 교단변경을 결의하였고 그 교단 탈퇴에 동의한 교인들이 피고의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으므로, '종전 피고'의 실체는 G 교단을 탈퇴하고 명칭이 변경된 원고로 존속하고 '종전 피고'의 재산인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한다. 그럼에도 교단 탈퇴에 반대한 잔존 교인들로 구성된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설령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사자 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 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위의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그리고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반대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며, 그 교회 구성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 상실은 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 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피고'의 정관에는 '정관을 수정 및 개정코자 할 시에는 당회의 연구와 의결을 거쳐서 정기총회의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제20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적용하면,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교단 탈퇴가 '종전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이하 '교단변경 결의 요건'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거나(이 경우 '종전 피고'의 실체는 G 교단을 탈퇴한 원고로서 존속하게되므로 오히려 '현재 피고'의 당사자 능력이 문제되게 되고, '현재 피고'가 원고와 별개의 실체인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② 이 사건 교단 탈퇴가 위 교단변경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로서 원고를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한다.

3) 우선, 이 사건 교단 탈퇴가 위 교단변경 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살펴본다.살피건대, 이 사건 교단 탈퇴 당시 '종전 피고'가 G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G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하여 찬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D이 이 사건 교단 탈퇴에 관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교단 탈퇴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교단변경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피고'의 동일성은 여전히 G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로서 원고를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기초사실 및 갑 제6,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A종교단체 C교회)'와는 다른 명칭(B교회)을 사용하고, 원고의 대표자로 추대된 D의 주재하에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하지 않은 교인들과 별도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였으며, 2013. 6. 19. 별도의 정관을 제정하기도 하는 등 '현재 피고'와 별도로 활동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0, 12, 14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단 탈퇴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서면에는 이 사건 교단 탈퇴 동의에 서명한 교인들이 G를 탈퇴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종전 피고'로부터 탈퇴한다거나 '종전 피고'와는 별개의 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교단 탈퇴는 '종전 피고'가 G에 납부하여 왔던 현금 액수의 적정성 및 G의 이사인 K 목사의 개인 비위에 대한 논쟁이 발단이 되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기존 교인들 사이에 '종전 피고'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동의한 교인들은 이 사건 교단 탈퇴 당시 전체 교인 중 2/3 이상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단 탈퇴 이후에도 '종전 피고'가 예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이 사건 2부동산에서 예배를 보았고, G가 위 D을 제명하고 H를 피고의 목사로 임명하자 "이 교회는 우리들 교회다. 우리는 G를 탈퇴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H가 위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도했던 사실에 비추어 '종전 피고'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 운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 역시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은 물론이고 이 사건 2016.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교회는 교회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과 관계없이 물적·인적구성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2016. 11. 11.자 준비서면에서 '종전 피고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교단 탈퇴에 동의한 교인들의 교리나 예배방법이 위 탈퇴 전후로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교인들은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회의 명칭만을 변경한 점, ⑤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에서도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에서 탈퇴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은 '종전 피고'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교단 탈퇴에 찬성 한 것으로 보일 뿐, 교단 탈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종전 피고'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종전 피고'의 교단 탈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피고'의 동일성은 여전히 G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되고, 이 사건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피고'를 탈퇴하고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별개의 새로운 교회로서 원고를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소 제기 요건에 관한 판단

그리고 설령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 제14조 제1 내지 3항은 "당회원은 목사나 장로로 구성된다. 당회장은 담임 목사로 한다. 당회는 모든 재산을 관리 및 보호하며 교회의 유사시 당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교회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안건으로 한 당회 결의를 거쳤거나 원고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적법한 당회 또는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열, 판사 설승원, 판사 김두희

별지1

목 록

1. 전남 강진군 답 3312㎡
 2. 전남 강진군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
 - 1층 309.75㎡ 종교집회장
 - 2층 273.49㎡ 종교집회장
 - 3층 51.59㎡ 종교집회장
- 부속건물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45㎡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30㎡ 끝.

별지2

목 록

등록번호

차 명 그랜드 스타렉스

형식 및 연식 TQBJBB 2012

차 대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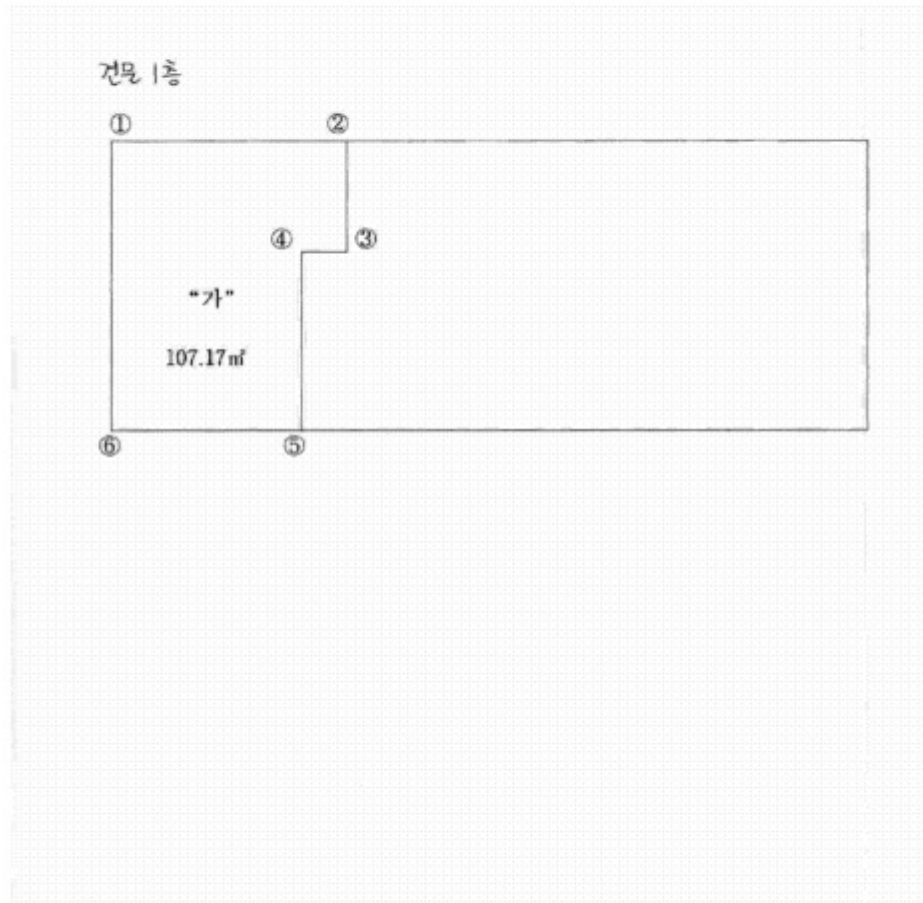
원동기형식 D4CB

사용본거지 전라남도 강진군

등록연월일 2012. 6. 5. 끝.

별지3

도면



1) 이 사건 교단 탈퇴가 있기 전의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